판례공보

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원도서관 2026년 11월 1일 제741호

민 사

1 2026. 9. 2. 선고 2026다203412 판결 〔구상금〕 ····· 1993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그러한 자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운전피보험자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낙한 승낙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동차대여업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식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甲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丙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乙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乙 회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피보험자인 甲이 丙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책임보험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함을 알면서 그러한 자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전피보험자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운전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그 운전자의 운전을 승낙한 승낙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甲이 자동차대여업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정식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甲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닌 丙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 관하여 乙 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82조에 따라 乙 회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문구에서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乙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丙은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한 승낙피보험자인 甲이 丙의 운전을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거나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제3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甲이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보험자인 丁 회사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甲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차별구제청구〕 ····· 1996

[1]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의 '상영'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의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영화상영업자가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 같은 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리어 프리 영화를 폐쇄형 상영 방식으로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서버·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거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및 장애인의 영화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의미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甲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

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乙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한 것은 乙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함으로써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정보 관련 행위자, 문화·예술사업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체육·복지시설·시설물·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사용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하 '행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위자 등'에는 매우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장애인이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제목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자 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에 의해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를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제3조 제8호 (가)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비전자정보'를 '이러한 전자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제3조 제8호 (나)목]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다(제2조 제1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자료 또는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하여(제3조 제11호),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상영'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이다(제2조 제8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배포'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거나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배포'는 이와 같이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널리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영화상영업자의 경우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한 영화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널리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의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3] 영화상영업자는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배리어프리 영화에 대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편에서 다시금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각의 생활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면서 그 차별들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생활영역별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그중 일부 사항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영역에 관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역시 제1항에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그중 일부 행위자가 부담하는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그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및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체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이하에 규정된 구체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각 항에서 영화상영업자의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화상영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수범자 중 하나인 문화·예술사업자로서 영화라는 정보를 상영의 방식으로 배포하고

있는 이상, 영화상영업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 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은 위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화면해설은 위 규정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10호,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9. 27. 법률 제18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제1호), 보조인력(제2호), 장비 및 기기(제3호),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편의들은 유형적 또는 인적 편의들이어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자막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모법 조항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적극적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 및 비언어적 방식을 통하여 처리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자료나 지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과 그 취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의 내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개념을 보태어 보면,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려면 화면해설·자막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 무형의 파일형태로 이루어진 화면해설·자막은 위와 같은 '정보'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영화의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하는 정보인 화면해설·자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5]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제1조)에도 부합한다.

영화상영업자가 제작업자, 배급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화면해설·자막을 시·청각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 화면해설·자막을 송출해주는 서버는 폐쇄형 상영방식(화면해설이나 자막을 별도의 개인용 수신기기를 통하여 제공하여 수신기기를 사용하는 관객들에게만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노출되는 방식)에 의하여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또는 편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영화상영업자가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화면해설·자막을 제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위와 같은 서버·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그 취지에 부합한다.

[6]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전문),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리고 헌법 제34조는 헌법 전문(前文)의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한편(제1항), 이와 같은 인간다운 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지우고 있고(제2항), 신체장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여(제5항)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제1조).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도 포함된다.

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많은 생활영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등을 보장

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라 요청되는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적극적 조치는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후 판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 조치의 형량 과정에서 그 조치의 수범자인 피고의 이익과 그 상대방인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반영될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게 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므로,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장애인 개인의 자아 발전 및 사회 참여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의 사회통합을 위한 직접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

함에 있어, 더 나아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 헌법이 지향하는 장애인의 보호라는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상의 자유 보호라는 가치가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甲 등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조치로서 배리어 프리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의 제공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乙 회사 등의 행위가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및 수신기기 등 제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제한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乙 회사 등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甲 등의 정보 접근권 또는 영화 향유권의 보장과 乙 회사 등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서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퇴직금등〕 ····· 2021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은 乙 공단 소속 근로자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었는데, 甲 등이 6. 30. 정년퇴직한 후 乙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공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乙 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

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등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여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등은 乙 공단 소속 근로자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기준일은 매년 7. 1.이었는데, 甲 등이 6. 30. 정년퇴직한 후 乙 공단을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공단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는 연차휴가 기준일이 7. 1.이고 퇴직일이 6. 30.인 경우를 '연차휴가 기준일과 퇴직일이 일치하는 경우'의 예시로 들면서, 이 경우 퇴직일 다음 날을 기준일로 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6. 30. 퇴직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위 설명자료에 의하면 乙 공단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 즉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한 甲 등은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에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 등의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퇴직일 다음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 甲 등이 乙 공단을 상대로 그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2973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임대료등〕 … 2025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후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乙 회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보증금 인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관한 乙 회사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乙 회사의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3] 甲 등은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다음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후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乙 회사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보증금 인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거나 임대인의 적법한 인상 통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이 임대보증금 인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정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관한 乙 회사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할 뿐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乙 회사가 甲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 및 甲 등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을 통보한 행위는 乙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임대주택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乙 회사의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322075 판결 〔기타(금전)·손해배상(기)〕 … 2031

[1]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1]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소의 변경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이나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소액사건 등 및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상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한다. 이러한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시·군법원이 법에서 규정하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2]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하지만, 전속관할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도 원심판결을 조사할 수 있다.

6 2026. 9. 3. 선고 2025다212572 판결 〔손해배상(기)〕 ····· 2033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법리가 사법보좌관의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직무행위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과 乙 등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乙 등이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에 대해 乙로부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乙 등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등이 甲에게 乙의 등기말소를 위한 등기신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내용증명우편만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으며,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이 乙 등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자, 甲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 법리는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2조에 규정된 집행문을 내어주도록 명하는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기준의 내용과 위반 정도, 수행하는 직무행위의 성질, 직무행위의 잘못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과 乙 등이 각자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乙 등이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에 대해 乙로부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乙 등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등이 甲에게 乙의 등기말소를 위한 등기신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내용증명우편만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였으며, 그럼에도 사법보좌관이 乙 등에게 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甲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자, 甲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에게 미치는 종국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동시이행으로 등기신청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여 신중히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이 구비되어야 한다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명확하고 지극히 전형적인 사정으로서 제출된 자료나 등기부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법보좌관으로서는 적어도 보정명령·심문 등의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의 제출이나 구비서류의 보완을 촉구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이행한 후 그럼에도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집행문부여를 거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법보좌관이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시이행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7 2026. 9. 3. 선고 2026다202915 판결 〔부당이득금〕 ····· 203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 및 '용도폐지'의 의미(=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 / 일반재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중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부분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2]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눈 다음,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행정재산 중 하나인 공공용재산으로 정하고 있고(제6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도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정비기반시설이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을 의미한다고 정하고(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은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마찬가지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정한다(제3조).

이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즉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제27조 제1항 본문),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41조 제1항), 나아가 행정재산에 관하여만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40조 제1항), 이는 공유재산법에서도 같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 그 성질을 잃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용도폐지'도 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와 같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폐지'의 의미에다가 사업시행자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에 관하여는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상취득할 수 있는 점, 일반재산까지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재산 중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용도가 폐지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3항 제4호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가 사

8 2026. 9. 3. 선고 2026므10232 판결 〔혼인의무효확인등의소〕 ····· 2044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행정

9 2026. 9. 2. 선고 2023두5347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2045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나)목(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 전문(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개정 조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개정 조항 개정 당시 개정 이유로는 '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재해발생 후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시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이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이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조항의 개정 이유 중 후자의 개정 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개정 조항이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

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및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③ 개정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전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10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 〔청산금청구의소〕 ····· 2052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고 이행기만 유예하기로 정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효력(무효) 및 이에 근거한 같은 취지의 결의의 효력(무효)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 해당 구역 내 기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전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에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시행자의 처분이다. 이러한 환지처분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 수용되었다가 토지소유자의 일부에게 환지를 부여하고 시행자에게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다. 이때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따라 종국적으로 물권적 권리관계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환지처분은 토지수용과 유사하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해야 하고(제52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해야 하며(제52조 제2항),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하며(제62조 제1항),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되고(제62조 제5항),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제68조 제1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교부는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과 현실적인 환지면적과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소유자 사이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을 공평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의 교부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위 소유권자에 대하여 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은 위 소유권자가 환지처분으로 잃게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규정 및 청산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격을 종합해 볼 때, 시행자가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도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68조 제2항은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 제34조는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 3할의 범위 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산금의 분할징수 내지 분할교부에 관한 규정을 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취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까지 청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경우 청산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가 침해받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규약이나 정관 등에 근거한 같은 취지의 결의도 마찬가지이다.

11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 2057

어떤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폭력사안과는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며, 이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②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교육기본법 제2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또한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학교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폭력행위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적용되는데, 학생들은 성장함에 따라 인지·판단능력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학생이 인지·판단능력에서 어느 정도의 발달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법을 해석·적용하는 경우 가해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그런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위 법률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등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조 세

12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206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甲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甲 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부 잔대금 분납채권에 대한 연부이자를 익금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위 연부이자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연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甲 공사와 乙 회사 간 약정은 위 용지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부수적인 합의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

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소급적으로 실효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부이자는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용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이로써 위 연부이자에 관한 甲 공사와 乙 회사 간 약정 및 위 연부이자의 소득 실현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계약해제의 효과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3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2069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세를 비롯한 가산세 역시 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 기준)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나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본세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 역시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고,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해당 국세의 포탈이나 부정환급·부정공제가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는, 제1호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을 위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개정 이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경우에는, 본세 자체에 조세포탈이 존재하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위 제1호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4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2073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15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2077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위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과 그 국외 소재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국외 소재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단지 과세관청이 알고 있는 국외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되지 아니한 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세관청이 국외에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로 앞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해당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납세자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6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080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면, 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2026. 9. 3. 선고 2026두30813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 2084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준거법(=우리나라 법)

[2]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사용료의 의미

[3] 甲 유한회사가 이탈리아 乙 법인과 체결한 ‘甲 회사는 모든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乙 법인의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甲 회사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 값보다 높은 경우 甲 회사가 乙 법인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乙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乙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급금액이 상표 또는 상표권 및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이태리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용료'에 대해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는 한·이태리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는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이태리 조세협약의 '문맥'으로부터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사용료소득에 관한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 본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상표권' 등을,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들고 있다. 여기서 위 (나)목에서 정한 사용료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3] 甲 유한회사가 이탈리아 乙 법인과 체결한 '甲 회사는 모든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乙 법인의 상표를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과 상호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甲 회사 소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의 중위 값보다 높은 경우 甲 회사가 乙 법인에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乙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乙 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에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에 대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아 간판 등에 이를 표시한 것은 상품에 관한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구 상표법(2022. 2. 3. 법률 제18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고, 위 지급금액은 乙 법인 상표의 사용에 대해 위 계약이 마련한 정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乙 법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위 지급금액은 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18 2026. 9. 2. 선고 2021도11473 판결 〔업무방해〕 ····· 2089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의미 및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도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판결이유에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문으로부터 판단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음에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 유무(적극)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하고, 법률명은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위증〕 ····· 2092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방법

[2]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 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변호인이 제3자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한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0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209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는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4항)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을 보아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관하여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를 발하여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 또는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